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고, 신고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대장과 해당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증에 신고내용을 각각 적어 넣은 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

수료를 내야 한다.

별표 1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4]

수수료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

종목	수수료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5,000원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5,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10,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5,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5,000원
한약업사(약업사) 허가신청 또는 한약방(약방) 이전 허가신청	5,000원
한약업사(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	1,000원
한약업사시험 응시	5,000원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 변경신청 또는 지위 승계 신고	10,000원
면허증등의 재발급신청	2,000원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재발급 신청	2,000원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의 국문·영문 증명	5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명칭		
	연락처 (전화) (팩스번호)	영업면적	
	주소	지위 승계 예정일 년 월 일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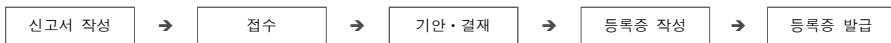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약사법」 제76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약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2) 양도·양수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3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고, 신고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대장과 해당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각각 적어 넣은 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